

제 호

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

[]토양오염조사
[]누출검사
[]토양환경평가
[]위해성평가

1. 상호(명칭):
2. 성명(대표자): (생년월일:)
3. 사무실 소재지: (전화번호:)
4. 실험실 소재지:
5. 기술인력 현황: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 유역(지방)환경청장
국립환경과학원장

직인

(뒤 쪽)

<변경사항>

일자	내용	확인

<행정처분사항>

일자	내용	확인